

창조홀 관리 규정

제정 2017. 10.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 창조홀(대회의실, 회의실,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구분) ① 창조홀은 다음과 같이 운영 관리한다.

1. 시설관리
2. 임대 및 사용관리

② 창조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창조홀(대회의실,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할 경우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7. 기타 창조홀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시간) ① 창조홀의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중 10:00~18:00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의 사용시간은 18:00~22:00로 한다.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관리보수) ① 사용자가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의 완료와 동시에 이를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회는 사

용자가 원상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협회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당해 사용자의 원상복구 예치비로 정산한다.

제7조(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창조홀의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창조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전매의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협회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제10조(물품의 보관책임) 시설에 반입된 사용자의 물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는 물론 사용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창조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② 사용자는 사용신청서 제출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와 같다.
- ③ 사용기간이 근무시간외 및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④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 ⑤ 회원 또는 장기사용자(년 10회 초과 또는 10일을 초과하는 사용일)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관계기관 또는 MOU체결 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부가세 별도>

구 분	규 모	금액기준	비 고
대회의실 (2층)	약 153m ² / 108석	기본요금	1. 기본요금은 3시간이내를 기준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당 기준임. 2. 인터넷 사용료 포함. 3. 냉난방, 전기료 포함.
		200,000원	
		초과시간	
		50,000원	
회의실 (2층)	약 29m ² / 15석	기본요금	
		50,000원	
		초과시간	
		10,000원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 부가세 별도>

구 분	대 관 료	비 고
비디오빔 프로젝트 (비디오 포함)	10,000원	1. 1일 1회 기준 2. 창조홀 마이크는 2개까지 제공
노트북 (프리젠테이션 포함)	10,000원	

3. 사용료 반환

<부가세 별도>

구 분	반환액	비 고
사용일 30일 전 취소 시	전액 반환	
사용일 20일 전 취소 시	사용료의 80% 반환	
사용일 10일 전 취소 시	사용료의 50% 반환	
사용일 5일 전 취소 시	사용료의 20% 반환	

창조홀 사용 준수사항

1. 협회에서 대여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시설 : 대회의실·회의실 나. 부속설비 : 빔프로젝트·음향장비 등
2. 시설의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중 10:00~18:00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외 사용시간은 18:00~22:00로 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용자가 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할 경우
 - 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 ⑥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 ⑦ 기타 창조홀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자는 사용신청서 제출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와 같다.
5. 협회의 업무, 기타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승인된 시설의 사용기간이나 사용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사용 후 사용전 상태로 테이블 정리 및 청소)**
 ② 사용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③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철저한 전력사용량 계산으로 정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피해발생시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시설에 반입된 사용자의 물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는 물론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위 사항과 창조홀 관리 규정에 대해 충분히 공지 받았으며,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 귀하